축산물중 유해물질 잔류방지대책

곽 형 근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수의사무관

UR협상타결이후 WTO체제 출범에 따라 이제 모든산업이 개방화 · 세계화 체제로 바뀜에 따라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되고 있다. 우리 축산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부분중의 하나가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제 대내외적인 모든 여건이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 향상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축산종사자들에게는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책임져야할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다. 그러면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그간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여온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국제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온 UR협상이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개방정책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따라 각국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수입검역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이용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UR협정의 부속협정으로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UR/SPS :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체결하고 검역이 국제교역에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동 협정문 제7조에는 회원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 이용되는 회원국간에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위생 및 검역규제를 차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자국영토와 회원국간에도 차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위생 및 검역규제는 국제교역의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검사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이 동등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개발도상국은 WTO발효후 2년동안 본 협정문의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도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수준이 동등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2년이 채 못되는 기간이다.

즉, '96년 12월말까지 수입하는 축산물과 같은 수준의 국내축산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그러하지 못하면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수준으로 약화시켜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축산물 검사수준이 시급히 국립동물검역소의 수입축산물검역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 국내산 축산물도 수입축산물과 같은 수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도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귀착된다.

즉, UR/SPS 협정문은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수준에서만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축산물을 교역하는 상대국들은 우리나라의 축산물중 유해물질 잔류검사결과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바, 축산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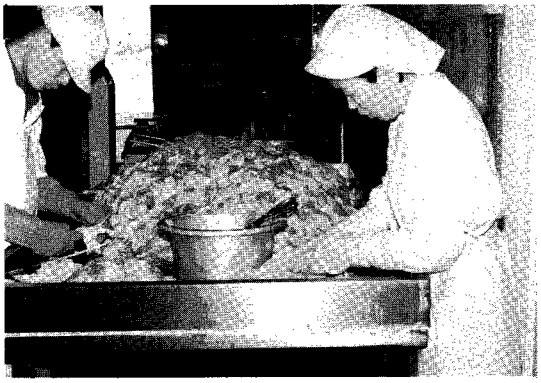

입국인 외국의 경우 '94년부터 한미통상실무회담등을 통하여 자료제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돈육수출국인 일본도 '94년 부터 자료제공을 요구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 대내적인 여건의 변화

'88년 11월 대일수출 돈육에서의 설파메타진 검출로 인한 일본정부의 반송조치와 관련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94년 12월 호주산 수입쇠고기에서의 농약(클로르후루아주론, CFZ)검출 보도때 표출된 소비자 여론에서 보듯이 이제 소비자의 안전축산물에 대한 요구는 선진국제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선진국제수준의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여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원하는 국내축산물 검사결과도 적극 알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다.

이상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농림수산부에서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방지에 대하여 추진하여온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표1. 국내산 축산물에 항균성 물질이 잔류하는 원인

휴약기간 미준수	불법약제사용	사료오염	사양관리불량	계
54.5	27.3	9.1	9.1	100%

※수의과학연구소 조사('89~'93)

2. 그간 우리부 추진내용

가. 검사조직 강화

- ㅇ '90.3월 : 국립동물검역소 정밀검사과 신설
- ㅇ '90.10월 : 각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실험실 조직강화(6급→5급)
- ㅇ '91.6월 : 수의과학연구소 잔류독성과 신설
- ㅇ '94.12월 : 국립동물검역소 정밀검사과 확대(1과→2과)

나. 예산지원(국비)

구 분		'91~'94	'95 계획
		백만원	백만원
장비지원	시·도가축위생시험소	1,162	160
	국립동물검역소	2,422	685
	소 계	3,584	845
기술교육	시·도가축위생시험소	15 (210명)	3 (30명)
	국립동물검역소 (국내·외)	63 (317명)	179 (102명)
	소 계	78 (527명)	182 (132명)

다. 조사(검사)사업

구 분	내 용
국립동물검역소	ㅇ수출입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정밀검사
수의과학연구소	ㅇ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정밀검사 ㅇ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실태조사사업 —'89~'93년 : 660건(소, 돼지 및 닭고기) —'94년 : 450건/연간(소, 돼지 및 닭고기)
시도가축위생시험소	ㅇ국내산 축산물중 항균성물질 잔류조사 —'91년이후 : 약45천건/연간(소, 돼지 및 닭고기) —검사결과 조치 1차양성판정시 : 해당가축 출하농장추적, 원인분석 및 농가계도, 가축재출하시 2차검사 실시(검사중 출고보류) 2차양성판정시 : 폐기처분(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기 타	ㅇ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대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기관 : 대한수의사회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공중보건학 교수) —실시기간 : '94.10~'97.7 —사 업 비 : 310백만원(현장애로 기술개발 대상사업) —내 용 : 도축처리공정 및 방법의 표준화 축산물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조사 사료의 잔류물질조사 등

라. 홍 보

ㅇ 양축농가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및 홍보리후렛 제작 배부

—각 시·도 순회교육 : 연인원 3,000여명

—리후렛 배부 : 400천부

3. 향후 추진방향

ㅇ 생산자 및 관련종사자의 의식개혁

－홍보 및 교육으로 개선의지 고취

○ 생산자단체 및 관련업계(사료・동약 등)의 실질적 개선노력 추진

○ 조사시험 기능강화

－시험장비 지원

○ 조사시험의 협력체제 구축

－국립동물검역소, 수의과학연구소, 시도 시험소

○ 잔류방지 중・장기 세부대책 수립

－국가잔류물질 조사계획(National Reduc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Program)개발

○ 잔류감소대책 추진협의체 구성

－농림수산부, 시험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유관협회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및 평가(매월 1회)

○ '95하반기이후 점진적인 규제검사 실시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 시대〉

○ 국내 소비자의 안전축산물에 대한 요구수준은 선진화
○ 교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국제규범에 따라 논리화

생산자 및 관련종사자의 의식수준 선진화 및
문제점 개선노력이 시급

〈참고1〉 축산물(식육)내 잔류물질 위생검사

가. 식육의 위생검사 내용

구 분	내 용	불합격시 처리
시설검사	작업전시설 이상유무	위해발견시 작업중단
생체검사	망진, 촉진 및 체온측정	도축금지
해체검사	두부, 흉강장기, 복강장기, 골반장기 및 지육	일부 또는 전부 폐기
잔류물질 검 사	필요시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등 실험실 검사	허용기준초과시 식용불가

나. 식육내 잔류물질검사 대상

구 분	종 류
항 생 물 질	테트라싸이클린 등 18종
합 성 항 균 제	설파메타진 등 20종
성장호르몬제	제라놀 등 2종
농 약	다이아지논 등 17종
계	57종

다. 식육내 잔류물질 검사방법

○ 전두수에 대한 검사가 불가하여 선진각국 공히 Monitoring & Surveillance Program에 의함

라. 우리나라의 식육내 잔류물질검사 내용

조사기관별	대 상 육 류	대 상 품 목	시험방법
국립동물검역소	수・출입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95.3.1부터 6품목 추가	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95.3.1부터 농약 추가	정밀검사
수의과학연구소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항생제, 합성항균제	간이시험 및 정밀검사
가축위생시험소(시・도)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항생제, 합성항균제	간이시험
국립보건원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항생제	간이시험 및 정밀검사

〈참고2〉 관 련 법 규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축산물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4조(검사기준 등)

① 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축산물의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수육중에 있는 잔류물질의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기준과 시험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수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별표5에 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표4〕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기준

1. 도축검사
   나. 검사요령
      (3) 세부검사요령
         (라) 필요에 따라 시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2. 닭의 검사
   나. 검사요령
      (3) 특수검사
         유해물질의 검사나 이상도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도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별표5〕 불합격 수축 및 축산물에 대한 처리

1. 도축검사
   다. 시험실 검사
      검사결과 수육중의 잔류물질이 그 허용기준을 넘은 때에는 식용으로 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 4 조(판매 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2.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제56조(폐기처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 4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양계

닭고기를 많이 먹읍시다!

독일직립식 케이지

20년의 제작노하우+구동독의 낮은임금

SALTECH

쌀텍 케이지 한국상륙

* 자금에서 건축, 수입, 설치까지 책임집니다.
* 저가격 실현, 20년의 설계 노하우 + 구동독의 낮은임금.

한국양계시스템

쌀텍사업부

전화 (02) 452-8055
팩스 (02) 452-2921